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8. 1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7월 4일 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1995년 7월 5일

다. 상정일자: 1995년 8월 1일 제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국장 남승운)

가. 제안이유

도시 기간시설이 복잡 대형화됨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자문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도시 기간시설의 안전진단 복구공사 설계 시행방법 및 적정성에 관한 자문(안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유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대통령령(12444호 1988. 5. 7)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설치목적은

가. 건설공사의 부실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시설물의 안전진단이나 공사시공 또는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미연방지 및 예방하는 역할로써 내용상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나. 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구성위원은 전문인으로 일반위원회 수준의 수당지급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

다. 본 조례제정의 근거는 아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설치함이 옳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의안 번호	2
----------	---

발 의 년 월 일: '95. 7. 4

발 의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도시기간시설이 복잡 대형화됨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자문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도시기간 시설의 안전진단, 복구, 공사설계 시행방법 및 적정성에 관한 자문(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 제6조)

3. 제정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1988. 5. 7 대통령령 제12444호) 제42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년 2,000천원)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기간시설이 복잡대형화됨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 사항
2. 공사설계 시행방법 및 그 공법의 적정성
3. 보도정비 심의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부의 관련 주관국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대학교수
2. 관련분야의 전문가
3. 덕망있는 지역유지 또는 구의원
4. 기타 기술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위원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에 대하여는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은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4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 ④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⑤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씩 두되 위원장이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⑥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문요청) ①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자문위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및 결과 보고) ①구청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 자문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자문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 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설기술 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간사는 부의 관련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담당계장이 된다.

②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발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단운영 규정을 이를 폐지한다.